

발 간 사

종래의 환경에 관한 문제는 대규모 오염원에 의한 심각한 公害問題 또는 開發事業에 의한 自然破壞의 문제 등 특정한 대규모 원인자 등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주가되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지구환경문제, 폐기물에 관련한 환경문제, 도시형 환경문제 및 생활상의 환경문제 등 다른 형태의 侵害様相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규제적 수단에 의한 手法만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환경법에서의 문제는 사람의 건강, 사람의 생활환경에 관련한 피해 및 자연환경의 파괴에 관한 것이 중심이다. 이러한 것들은 분야별로 각기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 보다는, 하나의 시책과 체제하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法學과 그의 實務는 부단히 對話하고 交流하여야 하지만 양자가 혼돈되어서는 아니된다. 법학이 法實務와의 관계에서 고유한 법학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方法論의 研究이고, 이를 통해서 법실무를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다.

生成中에 있는 환경법은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법영역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실무에서 법을 수단시하는 의식이 만연되어 있고, 환경법의 규범력을 도외시하고 환경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 무쌍한 법을 단순히 확인 하는데 그친다면 법학은 法技術에 불과하게 된다. 법학의 학문성은 일차적으로는 방법론에 있으며 그 출발점도 역시 방법론이지만, 법학의 궁극적인 학문성은 방법론의 차원에서 한단계 뛰어넘어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의 연관성을 탐구하여 법을 규명하는데 있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話頭는 환경친화가 아닌가 합니다.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기업경영·물관리·발전설비 및 물건의 재활용 등 모두가 환경친화적 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환경보전과 국토개발”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본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모아 보았습니다. 특히 독일, 일본 및 중국에서 오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이 논문들이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을 위한 법제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본 학회지가 나오기 까지 수고하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2001. 12. 31.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姜儀中